

청주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21가합5308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양공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우산

담당변호사 서재국, 오경아, 전성범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성준, 석동규

변론 종결2023. 5. 26.

판결 선고2023. 6.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1,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9. 6. 19.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고,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피고는 1994. 8. 25.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E는 피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E의 조카인 G는 2004년경 피고와 F에 입사하여 2006년경부터 위 각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E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3) 피고(자본금 규모 1,070,000,000원), F(자본금 규모 400,000,000원), 원고(자본금 규모 50,000,000원) 3개 회사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각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피고의 주식을 E와 G, H(E의 동생), F가 전부 가지고 있으며, F는 G 및 E의 형제인 I, H가 현재 사내이사 내지 전직 이사로 역임한 적이 있는 등 가족 중심으로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E가 2019년경 피고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E와 G 사이에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스팀공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 개시 전인 2014. 1. 31.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스팀1) 공급계약(이하 '최초 스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스팀공급계약

○ 열원(스팀)공급단가: 30,000원/톤(방지시설 공동사용기준)

○ 열원(스팀)정산방법: 매월 말일 원고의 건조플랜트에 부착된 누적스팀사용량 데이터값에서 전월 말일 데이터값을 차감한 값

○ 열원(스팀)공급기간: 2014. 2. 1. ~ 2023. 1. 31.(10년, 상호협약에 따라 자동연장될 수 있음)

2)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인 2015년경 사후적으로 계약체결일을 2014. 1. 31.로 소급한 스팀공급 계약(이하 '제1 스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31.경 스팀공급 및 방지시설 사용 계약(이하 '제2 스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스팀공급계약

○ 스팀공급단가: 35,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4. 10. 20. ~ 2023. 10. 19.(10년)

○ 정산방법: 스팀유량계 계측(계측일 매월 말일)하여 사용한 양에 톤당 단가를 곱한다.

○ 특기사항: 유량계가 설치되기 전에 스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스팀공급대가의 산정은 계약일로부터 소각기 가동시간에 8톤을 곱한 값으로 하며 산출내역서를 갈음하여 소각시설 운영현황자료(Cleansys 전송자료)를 첨부한다.

제2 스팀공급계약

○ 스팀공급단가: 36,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기간: 2014. 10. 20. ~ 2023. 10. 19.(10년, 단 공급조건 변경에 따른 매년 계약 변경 가능)

○ 정산방법: 스팀유량계 계측(계측일 매월 말일)하여 사용한 양에 톤당 단가를 곱한다.

○ 특기사항: 유량계가 설치되기 전에 스팀의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스팀공급대가의 산정은 계약일로부터 소각기 가동시간에 8톤을 곱한 값으로 하며 산출내역서를 갈음하여 소각시설 운영현황자료(Cleansys 전송자료)를 첨부한다.

다. 원고의 스팀사용료 지급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스팀을 공급받은 대가로 피고에게 5,500,182,000원의 스팀사용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2, 17, 2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제1, 2 스팀공급계약은 피고의 매출액을 최대한 부풀려 회계를 분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위 각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초 스팀공급계약에 정해진 공급단가인 '30,000원/1톤'에 스팀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위 최초 스팀공급계약에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스팀사용료는 4,489,159,000원인데,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한 스팀사용료는 5,500,182,000원인바, 피고는 과다하게 지급받은 스팀사용료 1,011,019,000원²⁾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제1, 2스팀공급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설령 최초 스팀공급계약도 효력이 없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팀사용료 단가에 관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분쟁이 발생한 2019년경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스팀사용료는 객관적인 단가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단가인 '30,274원/1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970,018,000원의 스팀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0,0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³⁾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2)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청주시에 대한 2022. 9. 3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4. 5. 26. 청원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스팀공급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 내지 16, 18, 25, 26호증, 을 제1, 2, 5, 7,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에 대한 2022. 7. 15.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원고와 피고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의사 없이 피고의 회계를 분식할 목적으로 형식상 체결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제1, 2 스팀공급계약서의 각 말미에는 원고의 법인 인감이 각 날인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문서인 위 각 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달리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위 각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②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에게 스팀 및 방지시설 사용 정산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조정근거로 '제2 스팀공급계약서 A조 1항, 2항, F조 2항 관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원고 스스로도 제2 스팀공급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4137호)에서 2021. 7.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1 스팀공급계약과 제2 스팀공급계약은 스팀공급 조건 및 정산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제1 스팀공급계약과 제2 스팀공급계약이 그 규정 형식이 동일하고, 일부 공급조건(스팀공급단가 등)이 변경된 이외에 주요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는 위 소송에서 제1, 2 스팀공급계약서에 기초한 유효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제1, 2 스팀공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원고가 사건에 따라

편의적으로 제1, 2 스팀공급계약의 효력에 대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④ 원고가 2014. 5. 26. 청원군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최초 스팀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곧이어 같은 해 6. 26.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최초 스팀공급계약서는 원고가 청원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다가, 원고가 위 허가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특별히 사용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원고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최초 스팀공급계약서를 첨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 2 스팀공급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5년경에는 2,100,000,000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재무구조가 개선된 결과 2018년부터는 영업손실이나 당기순손실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8년 매출총이익 448,566,753원, 2019년 매출총이익 266,204,024원이 되는 등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가 회계를 분식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스팀사용료를 부풀린 결과 원고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원고의 주장과 배치된다.

⑥ 원고와 G는 '분식회계를 통한 범행의 점'을 포함한 총 9개 혐의로 수사기관에 E를 고소·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담당 검사는 2021. 7. 29. 위 분식회계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에 정해진 것 보다 오히려 적은 스팀사용료를 지급하였고, 통상 분식회계는 없는 가공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자산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거나 가공의 외상미수금을 만드는 등 말 그대로 허위의 수치를 만들어 기업 회계에 반영시키는 행위를 뜻하나, 단순히 스팀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기업 간 불공정거래나 채무불이행 등의 관점에서 논할 수는 있어도 허위의 매출을 가장하는 회계부정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2022. 1. 11.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재정신청하였으나 2022. 5. 3.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2초재19호].

⑦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J의 증언, K, L가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데, 증인 J은 G가 피고의 상무이사로 근무할 때 15년 이상 G를 보좌한 최측근이었고, K, L 또한 G의 측근으로서 위 증언 및 진술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도 반하는 것인바, 위 증언 및 위 진술서의 각 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스팀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는지 여부 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최초 스팀공급계약서는 원고가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작성된 것임에 반하여, 제1, 2 스팀공급계약서는 원고가 본격적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 사업을 시작할 무렵 작성된 것인 점, 제2 스팀공급계약의 내용은 제1 스팀공급계약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스팀공급단가만 '35,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에서 '36,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스팀공급단가를 규율하는 계약은 최초 스팀공급계약이 아닌 제2 스팀공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로부터 180,875톤의 스팀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제2 스팀공급계약에서 정한 단가(36,000원/1톤)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스팀사용료는 6,511,500,000원(= 180,875톤 × 36,000원)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에 미치지 못하는 5,500,182,000원의 스팀사용료만 지급한 것이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스팀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스팀공급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은 합의만 유효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스팀사용료를 과다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 원고가 처리한 슬러지의 양을 산출한 후, ㉡ 슬러지 1톤을 처리하는 데 1톤의 스팀이 사용된다는 전제 하에 스팀공급량은 슬러지 처리량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 최초 스팀공급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스팀공급단가는 스팀 1톤 당 30,000원임을 전제로 원고가 실제 지급하였어야 할

스팀사용료를 계산한 다음, ㉠ 위 스팀사용료와 원고가 그동안 실제 지급한 대금 사이의 차액 및 원고가 피고의 슬러지 건조를 대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슬러지 대행 처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계산하고 있다.

㉡ 그러나 2019년 4분기 슬러지 처리량이 7,518.23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제출한 슬러지 처리내역(갑 제15호증의 5)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2019년 4분기 슬러지 처리량인 5,083.21톤⁴)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한 슬러지 처리량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슬러지 투입량 4,167kg/hr에 대한 건조증기 소요량을 계산한 값이 4,207.6kg/hr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슬러지 1톤을 처리하는 데 1톤의 스팀이 사용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확인서의 내용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상태에서 함수율(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의 비율) 80%의 폐기물을 함수율 10% 수준까지 건조시키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건조증기가 필요한지 시험적으로 따져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건조시킬 폐기물마다 성상이나 함수율이 다르고 건조기가 가동되면서 에너지 손실, 효율 저하, 스팀접촉면 불균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상 수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스팀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러지 1톤을 처리하는 데 1톤의 스팀이 사용된다는 주장은 이상적인 수치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슬러지 건조를 대행 처리한 비용도 스팀사용료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는 "피고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을 볼 때 피고가 건조기 2대를 이용하여 하루에 225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허가가 난 사실, 피고의 폐기물중간처분 및 재활용 실적보고서를 볼 때 피고의 연 단위 처리물량을 1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로 하루에 100톤도 안 되는 물량을 처리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건조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전산적 자원관리 내역의 계약상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슬러지 건조를 대행 처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원고가 피고의 슬러지 건조를 대행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슬러지 건조 대행비 지급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이상 건조대행비를 이 사건 스팀사용료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피고는 2019년 말경 기준 원고에 대하여 2,450,000,000원이 넘는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스팀공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과다한 스팀사용료를 지급받아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스팀공급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은 최초 스팀공급계약서가 아닌 제2 스팀공급계약이므로, 최초 스팀공급계약 및 제1, 2 스팀공급계약이 모두 효력이 없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미리

판사황정환

판사정태식

-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공급받아 슬러지(하수 또는 폐수의 처리과정에서 부유물질이 가라 앉아 생긴 침전물)를 건조하여 이를 연료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 2) 원고가 이미 지급한 스팀사용료 5,500,182,000원에서 원고가 최초 스팀공급계약에 따라 지급했어야 하는 스팀사용료 4,489,159,000원을 빼면 과다지급액 총액은 1,011,023,000원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3) 원고는 2023. 5.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위와 같은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면서도, 별도로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주위적 청구취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추가 하는 것으로 본다.
- 4) 원고가 2019. 10. 2.부터 2019. 12. 31.까지 처리한 슬러지 합계 총량.